

청렴활동지원 촉진지침 개정(안)

제정 2014. 7. 21.
개정 2015. 9. 3.

목 차

제 1 조(목 적)	1
제 2 조(용어의 정의)	1
제 3 조(청렴활동 촉진)	1
제 4 조(주무부서)	1
제 5 조(청렴업무 수행자에 대한 우대)	1
제 6 조(청렴업무 전담팀의 구성)	1
제 7 조(청렴업무 전담팀의 역할)	1
제 8 조(청렴·반부패 교육)	2
제 9 조(주무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)	2
제 10 조(위원회 등의 구성)	2
제 11 조(포상)	2
제 12 조(기타사항)	2
부 칙	2

청렴활동지원 촉진지침

제 1 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의 직무수행상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활동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청렴활동"이라 함은 연구원 임직원이 수행한 활동으로서 부패 및 공익신고, 부패방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출, 청렴교육 참석 등 연구원의 청렴도를 위해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.
2. "부패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- 나. 연구원의 예산사용, 연구원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연구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연구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-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제 3 조(청렴활동 촉진) ① 원장은 직원이 연구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 및 반부패 활동이 수반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- ② 직원은 하급자 또는 관련 부서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연구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1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에 대하여 동 행동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주무부서) 이 지침에 의한 청렴직무의 주무부서는 감사업무 담당부서가 된다. 다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총무담당부서에서 실무총괄을 할 수 있다.

제 5 조(청렴업무 수행자에 대한 우대) 이 지침에 의한 청렴활동 관계자는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우대할 수 있다.

1. 승진, 승급
2. 성과급지급
3. 해외연수 또는 직무훈련의 우선기회 부여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6 조(청렴업무 전담팀의 구성) 주무부서는 청렴활동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부서의 인력으로 업무수행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15.9.3.)

제 7 조(청렴업무 전담팀의 역할) 청렴업무 전담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기관차원의 청렴·반부패 방침의 수립 및 추진
2. 청렴 관련 현안에 대한 조사, 대책

- 3. 청렴교육의 내용
- 4. 기타 청렴활동 진행에 필요한 사항

제 8 조(반부패·청렴 교육 등) ① 주무부서는 직원에 대하여 이 지침수행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·진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신입직원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시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③ 금품·향은수수 등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제재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담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.(신설 2015.9.3.)

④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·청렴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.(신설 2015.9.3.)

제 9 조(주무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) 제 6조에 의한 전담팀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 10 조(위원회 등의 구성) ① 이 지침에 의한 청렴활동의 합리적인 심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렴활동촉진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 1항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제 11 조(포상) 이 지침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할 수 있다.

제 11 조의 2(내부신고자 보호)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에 의한 반부패청렴 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9.3.)

제 12 조(기타사항) 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 10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(14. 7. 21.)

제 1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감사인 행위의 간주) 제 4조에 의하여 총무담당부서가 청렴활동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업무의 수행으로 본다.

제 3 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5. 9. 3.)

제 1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